제2회 지역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6. 4. 29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6. 4. 29. (수) 16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0명)

- 이병태 분과위원장(주재)

- 민간위원 : 고동수, 고은아, 권태성, 김기명, 이민창, 정상훈, 정은미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해수부(김재철 기조실장)

Ⅱ. 상정안건

연번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분
①	2026-87	농식품부	전통식품품질·식품의 산업표준(KS)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개정안	의결
②	2026-106	국조실	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운영방안	보고

Ⅲ. 회의 결과

1. (심의) 「전통식품 품질·식품의 산업표준(KS)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」 개정안 (농식품부)

□ 개 요

<table>
<tr><td>소관 부처</td><td>농림축산식품부</td></tr>
<tr><td>규제사무명</td><td>1. 전통식품 품질·식품의 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기준 신설(별표 1)</td></tr>
<tr><td>규제내용</td><td>< [별표1]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(요약) >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<tr><td>조직·인력</td><td>▲운용재원(3개월 이상 확보), ▲인력(2명이상),
▲교육(연 1회, 4시간 이상)</td></tr><tr><td>시설</td><td>▲사무실, ▲검사장 및 검사장비(위탁 가능)</td></tr><tr><td>인증
업무규정</td><td>▲인증업무 실시방법, ▲사후관리방법, ▲인증수수료,
▲인증심사원 자격기준, ▲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</td></tr><tr><td>보충
요구사항</td><td>필요시 국제표준화기구(ISO)와 국제전기표준회의(IEC)가 정한 "제품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" 기준을 보충적 적용가능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위원회
결정 내용</td><td>1. (안 별표 1) 식품의 산업표준·전통식품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에 있어 [별표 1] '1. 조직 및 인력, 가. 조직, 8)'의 "인증기관은 1)부터 7)까지의"를 "인증기관은 1)부터 3)까지의"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
*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가 신청 당시에 구비·입증하기 어려운 요건 (4) 업무의 공정한 수행, 5) 기관 내부의 권한·책임 명확화, 6) 상업·재정적 등 압력 우려 없음, 7) 정보 제3자 제공금지)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제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
2. (기타) 농식품부는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규제의 투명성, 필요성, 진입제한 여부, 인증 수요 감소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·검토해 개선방안을 '26.9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부대권고</td></tr>
</table>

□ 논의 내용

○ (OOO 위원) 전통식품 품질의 경우 720개 정도, 식품의 산업표준의 경우 2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, 인증업체의 취소 또는 포기 사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

○ (OOO 위원) 현재 인증기관이 2개가 있는데,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늘어나면 인증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, 인증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?

→ (부처) 전통식품의 경우 학교급식 등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증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, 인증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이 적어 인증기관이 추가로 들어올 여건이 되지 못함

○ (OOO 위원)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'업무의 공정한 수행', '상업적·재정적 등 일체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', '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'는 신청 당시에 증명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

○ (OOO 위원) 현재 식품의 산업표준(KS)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적고, 전통식품에서 한국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은 재료의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통식품 인증에도 필요한 것인지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의문임

○ (OOO 위원) 우수식품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

○ (OOO 위원) 전통식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→ (부처) 인증제도의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으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겠음

○ (OOO 위원)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‘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기준’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, 2020년 고시를 제정할 때 서로 다르게 정하고서 지금 다시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?

→ (부처)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, 최초 제정할 때는 원산지 인증제도가 좀 더 단속 업무성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됨

○ (OOO 위원) 전통식품 산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여 키운 사례가 있는지?

→ (부처)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가 ‘91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, 현재 학교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음. 지자체별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식도 좀 강화되어 지역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

○ (OOO 위원)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인력 부분에서 전문대학 이상 학위, 산업기사 자격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?

→ (국조실) 인증기관 지정 기준의 인력 부분에서 가)는 학력에 대한 부분이고, 나)는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고, 다)는 학력·자격 없어도 경력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○ (OOO 위원) 전통식품 명인 인증 제도가 있고 전통식품 인증이 있는데, 명인이 만든 제품은 전통식품에 해당하는지, 명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함

○ (OOO 위원) 수산 전통식품 인증 제도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가 필요함

○ (OOO 위원) 사실 현장 입장에서는 전통식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영세해서, 이러한 인증 제도가 생산자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함

□ 심의 결과

○ (**안 별표 1**) 식품의 산업표준·전통식품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에 있어 [**별표 1**] '**1. 조직 및 인력, 가. 조직, 8)**'의 "**인증기관은 1)부터 7)까지의**"를 "**인증기관은 1)부터 3)까지의**"로 수정하도록 **개선권고**

- '4) **업무의 공정한 수행**, 5) **인증기관 내부의 권한·책임 명확화**, 6) **상업·재정적 등 압력 우려가 없을 것**, 7) **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**'의 경우 **인증기관 지정 신청자**가 **신청 당시에 구비·입증하기 어려운 내용**이므로 **입증자료 제출 제외**

○ (**기타**) **농식품부**는 인증제도의 **내실 있는 운영**을 위해 **규제의 투명성, 필요성, 진입제한 여부, 인증수요 감소원인** 등을 면밀히 분석·검토해 **개선방안을 '26.9월까지 위원회에 보고**하여 줄 것을 **부대권고**

2. (보고)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운영방안(국조실, 2026-106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분과위원회 운영 주안점**

- (**선도적 역할 강화**) 규제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**개선 필요사항을 제시**하고 위원회의 **전문성과 경험**을 **활용**하여 규제정책**완성도 제고**

- (**현장 중심 규제합리화**) **분야별 협회·단체와 소통을 강화**하여 정책 **현장의 수요를 반영**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

- (**신설·강화 규제심사**) 사회이슈·논란 예상 규제, **이해관계자 이견이 첨예**한 안건은 **대면심사** 진행(이해관계자 의견청취)

- (**위원제기 규제이슈 관리**) **위원 제기 과제**를 **분과위 차원에서 논의**하고 **소관 부처 검토**를 거쳐 **제도개선** 등 **후속 조치 추진**

○ **'26년 지역분과위원회 운영계획**

- 분과 소관 주요 부처* **'26년 규제정비 계획** 보고 및 토의

* 교육부, 행안부, 농식품부, 문체부, 해수부 등

- 부처별 규제정비 계획 外 **위원 제기 규제이슈*** **별도 보고**

* 대학 대상 인증·평가제도 개선,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

□ **논의내용**

○ 위원 제기 규제이슈 관리체계의 **내실 있는 운영 필요**

○ **규제신문고**와 위원회 논의 간의 **연계 강화** 필요

□ **보고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